|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처리**  **유관 사항 조정 및 개선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5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건강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발전에 상응하는 수출 세금환급(면세) 관리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상무부세관총서세무총국질검총국외환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건강한 발전과 관련된 업무 촉진에 관한 통지> (상무함[2017]759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에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을 대행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하 ‘종합서비스 기업’)은 국내 생산기업을 대행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이 종합서비스 기업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수출 세금환급(면세) 업무 처리를 집중적으로 대행(이하 ‘세금환급 대행’)할 수 있다.  1.1 상무부 등 부서에서 규정한 종합서비스 기업 정의에 부합되고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한 경우  1.2 기업 내부에 이미 비교적 완전한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구축하였고, 이미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한 경우  2. 생산기업의 수출화물이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에서 세금환급 대행을 해줄 수 있다.  2.1 수출화물이 생산기업의 자체생산 화물 또는 자체생산 화물로 간주된 경우    2.2 생산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이고, 이미 규정에 따라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을 처리한 경우  2.3 생산기업은 이미 경외 단위 또는 개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2.4 생산기업이 이미 종합서비스 기업과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를 체결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에서 통관 및 검역신고, 물류, 세금환급 대행, 정산 등을 포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관련 법적책임을 명확히 한 경우  2.5 생산기업이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계좌개설 은행과 계좌번호(이하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를 제공한 경우  3. 생산기업은 세금환급 비안 대행을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 후, 처음 종합서비스 기업에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하기 전,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별첨1)을 제출하고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서비스 기업과 체결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를 보존비치해 둔 경우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생산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다시 해당 비안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세금환급 위탁 대행 비안 업무를 철회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종합서비스 기업에 해당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금액을 정산한 후 처리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 업무를 철회할 경우, 규정에 따라 우선 세금환급 위탁 대행 비안 업무를 철회해야 한다.  4.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 대행을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은 수출 세금환급(면세) 비안을 처리한 후, 각 생산기업을 위해 처음으로 세금환급을 대행하기 전,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을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보존비치한다.  4.1 생산기업과 체결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계약(협의)  4.2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각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4.3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상황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비안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처음으로 세금환급 비안 대행을 처리할 경우,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일회성으로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제출한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야 하고 일치할 경우, 세금환급 대행 비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일회성으로 종합서비스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6. 생산기업의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화물은 우선 수출화물 선적가격과 증치세 적용 세율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종합서비스 기업에 비고란 내에 ‘세금환급 대행 전용’이 명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이하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증빙으로 한다.  수출화물 선적가격을 위안화 외의 화폐로 정산하는 경우, 위안화 환율은 판매액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위안화 환율 중간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 상 ‘금액’란은 반드시 위안화 금액으로 환산한 수출화물 선적가격에 따라 작성한다.  7. 종합서비스 기업이 그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을 신고할 경우, 환급세액은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과 수출화물에 적용되는 수출 세금환급률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세액=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수출화물에 적용되는 수출 세금환급률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를 종합서비스 기업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8. 종합서비스 기업은 대외무역기업 수출 세금환급 신고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대행을 단독으로 신고하고,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세금환급 대행 신고서>(별첨2) 및 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공제면)과 기타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을 이행하고,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생산기업의 생산경영 상황, 생산능력 및 수출업무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9.1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제도를 제정하며, 리스크 통제절차, 규칙 및 관리제도 등을 포함한다.  9.2 세금환급 대행 리스크 관리통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업의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환급 대행 수출업무에 대한 사전(事前), 사중(事中) 및 사후(事後) 리스크 식별 및 분석을 진행한다.  9.3 연도 내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세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생산기업에 대해, 그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을 현장검사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화물 수출계약 또는 주문서, 생산설비, 경영장소, 기업인원, 회계장부 및 생산능력 등이 포함된다. 유관 검사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9.4 연도 내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세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생산기업에 대해, 수출화물의 무역 진실성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수출화물의 진실성, 수출화물과 세관신고서 정보의 일치성, 생산기업과 생산능력의 매칭성, 상응하는 물류 증빙과 수출수입 증빙 유무 등이 포함된다. 각 세금환급 대행을 위탁한 생산기업의 검사 커버율은 그 세금환급 대행 업무의 75%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유관 검사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국가세무국은 본 성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종합서비스 기업의 기타 이행해야 할 세금환급 대행 내부 리스크 관리통제 직책을 규정하고, 아울러 본 조 제(3), 제(4)항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가 필요한 생산기업의 세금환급 대행 세액과 생산기업 검사커버율에 대해 조정을 진행한다.  10. 종합서비스 기업은 본 공고 제9조 직책을 이행한 상세한 기록 등 정보와 모든 세금환급 대행 수출업무와 관련되는 계약(협의) 및 증빙 등 자료에 대해 제본, 보관, 보존보존비치를 규범화 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은 세금환급을 대행하는 수출업무에 대해, 대외무역기업의 자가수출업무 유관 비안 서류의 규정을 참조하여, 서류 비안을 진행해야 한다.    11.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기업 관리유형에 따라, 그 세금환급 대행을 심사 처리해야 한다.  12.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비준을 통과한 세금환급 대행 금액을 생산기업이 제공한 세금환급 대행 계좌번호로 환급하고, 세금환급 대행을 종결한 후, 종합서비스 기업에게 각 생산기업에 환급한 세금명세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13.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납품기업 수출환급(면세) 리스크 관리 유관 규정을 참조하여, 생산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기업에 이상 상황이 발견된 경우, 맞춤형 평가검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14. 세금환급을 대행하는 수출업무에 이상 상황이 존재하거나 규정에 따라 잠시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4.1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출업무에 대해 세금환급을 유예 처리한다.  14.2 이미 세금환급을 처리한 경우, 관련된 환급세액에 따라 이미 심사비준을 통과하여 세금환급을 대행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만큼 세금환급을 유예 처리한다.  14.3 상응하는 의문점을 배제한 후, 의문점을 배제한 결론에 따라야 비로소 지속적으로 세금환급 대행을 처리할 수 있다.  15.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가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에 추징한다.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생산기업 주관 세무기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관련된 환급세액에 따라 해당 생산기업의 이미 심사비준을 통과한 환급세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  16.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에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이 본 공고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합서비스 기업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생산기업이 추가 납부하지 않은 관련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7. 종합서비스 기업의 세금환급 대행에 아래의 상항이 존재할 경우, 종합서비스 기업 주관 세무기관은 발견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 그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조정해야 한다.  17.1 연속 12개월 내, 심사를 거쳐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5% 이상임을 발견한 경우, 관리유형을 1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7.2 연속 12개월 내, 심사를 거쳐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세금환급 대행 업무와 관련된 생산기업 수가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생산기업 수의 3% 이상임을 발견할 경우, 관리유형을 1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7.3 연속 12개월 내, 수출 세금환급 사취로 인정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2% 이상일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조정한다.    18. 종합서비스 기업이 연속 12개월 내, 수출 세금환급 사취로 인정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이 신고한 세금환급 대행 세액의 5% 이상일 경우, 36개월 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술한 36개월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세무기관의 서면통지서를 수취한 익월부터 계산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9. 세금환급을 대행한 수출업무에 만약 수출 환급세 사취 등 세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생산기업이 책임주체로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불법으로 은행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수출 환급세 사취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과 수출환급세를 사취하는 등 세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참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36개월 내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술한 36개월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세무기관의 행정처벌 결정(또는 재판기관의 판결 및 재정문서)을 수취한 익월부터 계산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0. 종합서비스 기업이 생산기업에 통관, 검역신고, 물류, 세금환급 및 정산 등 종합서비스를 대행 처리하고 취득한 수익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1. 본 공고에서 미진한 사항은 현행 수출 세금환급(면세)과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성(구, 시)국가세무국은 본 공고 규정에 근거, 본 지역의 실제와 연관 지어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22. 본 공고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2017년 11월 1일 후에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만약 생산기업이 2017년 11월 1일 전에 이미 종합서비스 기업에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세금환급 대행 전용 세금계산서 제외)를 발행한 경우일지라도 여전히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  별첨: 1. 세금환급 대행 상황 비안표.xls  <http://hb.ah-n-tax.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15b5eee77f5a497797f9ca6d5d4c20fb.xls>  2.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세금환급 대행 신고서.xls  <http://hb.ah-n-tax.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aaedb60c853d411b86f701cf461057d2.xls>  국가세무총국  2017년 9월 13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完善外贸综合服务企业办理出口货物退（免）税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35号  为促进外贸综合服务企业规范健康发展，建立与企业发展相适应的出口退（免）税管理模式，根据《商务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质检总局 外汇局关于促进外贸综合服务企业健康发展有关工作的通知》（商贸函〔2017〕759号）的精神，现将外贸综合服务企业代生产企业办理出口退（免）税事项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外贸综合服务企业（以下简称综服企业）代国内生产企业办理出口退（免）税事项同时符合下列条件的，可由综服企业向综服企业所在地主管税务机关集中代为办理出口退（免）税事项（以下称代办退税）:  　　（一）符合商务部等部门规定的综服企业定义并向主管税务机关备案。  （二）企业内部已建立较为完善的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制度并已向主管税务机关备案。  　　 二、生产企业出口货物，同时符合以下条件的，可由综服企业代办退税：  　　（一）出口货物为生产企业的自产货物或视同自产货物。  （二）生产企业为增值税一般纳税人并已按规定办理出口退（免）税备案。  （三）生产企业已与境外单位或个人签订出口合同。  （四）生产企业已与综服企业签订外贸综合服务合同（协议），约定由综服企业提供包括报关报检、物流、代办退税、结算等在内的综合服务，并明确相关法律责任。  （五）生产企业向主管税务机关提供代办退税的开户银行和账号（以下简称代办退税账户）。  三、生产企业应当办理委托代办退税备案。生产企业在已办理出口退（免）税备案后，首次委托综服企业代办退税前，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代办退税情况备案表》（附件1）并提供代办退税账户，同时将与综服企业签订的外贸综合服务合同（协议）留存备查。  《代办退税情况备案表》内容发生变化时，生产企业应自发生变化之日起30日内重新报送该表。  生产企业办理撤回委托代办退税备案事项的,应在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按规定向综服企业结清该生产企业的代办退税款后办理。  生产企业办理撤回出口退（免）税备案事项的，应按规定先办理撤回委托代办退税备案事项。  四、综服企业应当办理代办退税备案。综服企业办理出口退（免）税备案后，在为每户生产企业首次代办退税前，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代办退税情况备案表》，同时将下列资料留存备查：  　　（一）与生产企业签订的外贸综合服务合同（协议）。  （二）每户委托代办退税生产企业的《代办退税情况备案表》。  （三）综服企业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信息系统建设及应用情况。  《代办退税情况备案表》的内容发生变化时，综服企业应自发生变化之日起30日内重新报送该表。  　　 综服企业首次办理代办退税备案时，应将企业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制度一次性报主管税务机关。  五、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将综服企业报送的《代办退税情况备案表》内容与相应生产企业的《代办退税情况备案表》内容进行比对，比对相符的，应予以办理代办退税备案；比对不符的，将比对不符情况一次性告知综服企业。  六、生产企业代办退税的出口货物，应先按出口货物离岸价和增值税适用税率计算销项税额并按规定申报缴纳增值税，同时向综服企业开具备注栏内注明“代办退税专用”的增值税专用发票（以下称代办退税专用发票），作为综服企业代办退税的凭证。  出口货物离岸价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的，其人民币折合率可以选择销售额发生的当天或者当月1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  代办退税专用发票上的“金额”栏次须按照换算成人民币金额的出口货物离岸价填写。  七、综服企业向其主管税务机关申报代办退税，应退税额按代办退税专用发票上注明的“金额”和出口货物适用的出口退税率计算。  应退税额=代办退税专用发票上注明的“金额”×出口货物适用的出口退税率  代办退税专用发票不得作为综服企业的增值税扣税凭证。  八、综服企业应参照外贸企业出口退税申报相关规定，向主管税务机关单独申报代办退税，报送《外贸综合服务企业代办退税申报表》（附件2）、代办退税专用发票（抵扣联）和其他申报资料。  九、综服企业应履行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职责，严格审核委托代办退税的生产企业生产经营情况、生产能力及出口业务的真实性。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职责包括：  　　（一）制定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制度，包括风险控制流程、规则、管理制度等。  （二）建立代办退税风险管控信息系统，对生产企业的经营情况和生产能力进行分析，对代办退税的出口业务进行事前、事中、事后的风险识别、分析。  （三）对年度内委托代办退税税额超过100万元的生产企业，应实地核查其经营情况和生产能力，核查内容包括货物出口合同或订单、生产设备、经营场所、企业人员、会计账簿、生产能力等，对有关核查情况应有完备记录和留存相关资料。  （四）对年度内委托代办退税税额超过100万元的生产企业，应进行出口货物的贸易真实性核查。核查内容包括出口货物真实性，出口货物与报关单信息一致性，与生产企业生产能力的匹配性，有相应的物流凭证和出口收入凭证等。每户委托代办退税的生产企业核查覆盖率不应低于其代办退税业务的75%，对有关核查情况应有完备记录和留存相关资料。  各省（区、市）国家税务局可根据本省实际情况规定综服企业其他应履行代办退税内部风险管控职责，并对本条第（三）、（四）项规定需实地核查的生产企业代办退税税额和生产企业核查覆盖率进行调整。  十、综服企业应对履行本公告第九条职责的详细记录等信息和每笔代办退税出口业务涉及的合同（协议）、凭证等资料，规范装订、存放、保管并留存备查。  综服企业对代办退税的出口业务，应参照外贸企业自营出口业务有关备案单证的规定进行单证备案。  十一、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按照综服企业的出口企业管理类别审核办理其代办退税。  十二、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将核准通过的代办退税款退还至生产企业提供的代办退税账户，并在办结代办退税后，向综服企业反馈退还给每户生产企业的税款明细。  十三、生产企业主管税务机关应参照对供货企业出口退（免）税风险管理有关规定，加强对生产企业的风险管理工作。发现生产企业存在异常情形的，应有针对性的开展评估核查工作。  十四、代办退税的出口业务存在异常情形或者有按规定暂不办理退税情形的，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按下列规则处理：  　　（一）未办理退税的，对该出口业务暂缓办理退税。  （二）已办理退税的，按所涉及的退税额，对其已核准通过的应退代办退税税款，等额暂缓办理退税。  （三）排除相应疑点后，按排除疑点的结论，方可继续办理代办退税。  十五、代办退税的出口业务有按规定应予追回退税款情形的，由生产企业主管税务机关向生产企业进行追缴。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根据生产企业主管税务机关的通知，按照所涉及的退税额对该生产企业已核准通过的应退税款予以暂扣。  十六、代办退税的出口业务有按规定应予追回退税款情形，如果综服企业未能按照本公告第九条规定履行其职责，且生产企业未能按规定将税款补缴入库的，综服企业应当承担连带责任，将生产企业未能补缴入库所涉及的税款进行补缴。  十七、综服企业代办退税存在下列情形的，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应自发现之日起 20 个工作日内，调整其出口企业管理类别：  　　（一）连续12个月内，经审核发现不予退税的代办退税税额占申报代办退税税额5%以上的，管理类别下调一级。  （二）连续12个月内，经审核发现不予退税的代办退税业务涉及的生产企业户数占申报代办退税生产企业户数3%以上的，管理类别下调一级。  （三）连续12个月内，被认定为骗取出口退税的代办退税税额占申报代办退税税额2%以上的，管理类别调整为四类。  十八、综服企业连续12个月内被认定为骗取出口退税的代办退税税额占申报代办退税税额5%以上的，36个月内不得按照本公告规定从事代办退税业务。  上述36个月，自综服企业收到税务机关书面通知书次月算起，具体日期以出口货物报关单注明的出口日期为准。  十九、代办退税的出口业务，如发生骗取出口退税等涉税违法行为的，生产企业应作为责任主体承担法律责任。综服企业非法提供银行账户、发票、证明或者其他方便，导致发生骗取出口退税的，对其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第九十三条的规定进行处罚。  综服企业发生参与生产企业骗取出口退税等涉税违法行为的，应依法承担相应法律责任，且36个月内不得按照本公告规定从事代办退税业务。  上述36个月，自综服企业收到税务机关行政处罚决定（或审判机关判决、裁定文书）次月算起，具体日期以出口货物报关单注明的出口日期为准。  二十、综服企业向生产企业代为办理报关、报检、物流、退税、结算等综合服务取得的收入，应按规定申报缴纳增值税。  二十一、本公告未尽事宜，按照现行出口退（免）税和增值税相关规定执行。  各省（区、市）国家税务局可以根据本公告规定，结合本地实际，制定具体操作办法。  二十二、本公告自2017年11月1日起施行。具体时间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国家税务总局关于外贸综合服务企业出口货物退(免)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3号）同时废止。  2017年11月1日后报关出口的货物，如生产企业在2017年11月1日前已向综服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除代办退税专用发票外）的，仍按照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3号的规定办理出口退税。  　　特此公告。    　　附件:1.代办退税情况备案表.xls  <http://hb.ah-n-tax.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15b5eee77f5a497797f9ca6d5d4c20fb.xls>  2.外贸综合服务企业代办退税申报表.xls  <http://hb.ah-n-tax.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aaedb60c853d411b86f701cf461057d2.xls>  国家税务总局  2017年9月13日 |